

제 7 장 무역구제

제 1 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7.1 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그 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제 7.2 조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기준

1. 한쪽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3조 및 제4.2조에 따라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3조 및 제4.2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모든 그러한 조사를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 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다. 과도기간의 만료 이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그 적용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7.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 7.3 조 잠정조치

1. 자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권한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 공고를 자국의 관보에 공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잠정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공고를 공표한 날 후 최소한 2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후 최소한 45일까지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7.2조제2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4. 그 당사국은 제7.2조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7.1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 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2조제4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 7.4 조 보상

1. 한쪽 당사국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조치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행해지고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 경우, 제2항에 언급된 정지 권리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년간은 행사되지 아니한다.

제 7.5 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 따라 행하여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 따른 조치
3. 제2항을 제외하고, 이 조의 규정은 제20장(분쟁해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7.6 조

정의

제1절의 목적상,

권한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무역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통상산업관광부, 또는 그 승계기관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7.1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아니한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나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 후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양허표가 그 당사국이 그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철폐하도록 규정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은 그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을 말한다.

제 2 절 반덤핑 및 상계 조치

제 7.7 조 반덤핑 및 상계 조치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1994년도 GATT 제6조,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 간 반덤핑 또는 상계 조치 사안에 있어 다음의 관행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반덤핑협정」 제2.4조제2항상의 비교 기준과 관계없이, 「반덤핑협정」 제2조, 제9.3조, 제9.5조 및 제11조에 따라 반덤핑 마진을 산정, 평가, 또는 검토하는 경우, 모든 개별 마진은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평균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반덤핑협정」 제9.1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국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최소 관세’가 적절할 경우 덤픽 마진보다 적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 7.8 조 통보 및 협의

1. 가. 한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그러한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기회는 당사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나.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덤픽과 그러한 덤픽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법과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2. 가. 한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나.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법과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 및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 7.9조 분쟁해결

제7.7조제2항 및 제7.8조를 제외하고 이 절의 규정은 제20장(분쟁해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